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2. 2. 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협력이익배분제, 사전규칙에 따라 초과이익
배분” 보도에 대한 입장(문화일보, ‘12.2.2)

1. 기사내용

-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것으로 당초 이익공유제보다는 수혜 협력기업의 범위가 좁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금일 동반위에서 합의된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간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임
- 따라서 보도내용중 협력이익배분제를 “초과이익을 나누는 것”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름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 최우혁 팀장(02-2110-3994)
박일철 사무관 (02-2110-3995)

동반성장위원회 정영태 본부장(02-368-8402)
오완진 부장(02-368-8410)